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10.18.(화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10. 7.

나. 제 안 자: 정해권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: 2022. 10. 7.

라. 상정일자: 2022. 10. 18.(제2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: 정해권 의원

○ 검토보고: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인천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설치된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

○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존속기한 변경(안 제12조)

- **“2022년 12월 31일” 을 “2027년 12월 31일” 로 변경**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**본 개정 조례안**은 한강수계관리기금[1]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[2]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‘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’의 존속기한[3]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.

○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해서 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임. 위원회는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인천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,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·제도개선·운용평가 등에 있어서도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음.

○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,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, 현행조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

---

1) 한강수계관리기금 :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 (참고1 : 한강수계관리기금 개요)

2) 물이용부담금 :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부담금 (참고2 : 물이용부담금 개요)

3)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존속기한 : 제정(2017.12.31.년까지.), 개정(2022.12.31.까지)

별다른 이견이 없음. 다만, 그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현황, 개최실적, 위원회 자문을 받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대한 우리시 의견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반영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참고로, 한강수계관리기금은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해당 법률에 물이용부담금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물이용부담금의 지속적인 부과가 예상됨.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관련조례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한 바[4] 집행부에서는「지방자치법」시행령 제80조제1항의 “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” 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존속기한 5년 연장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?

⇒ (정해권의원) 서울시처럼 존속기간 삭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.

○ 사람이 살면서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. 인천시는 물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, 공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함. 환경국은 공기에 관한 사항도 신경써주시기 바람.

○ 존속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?

⇒ (환경국장)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.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음.

---

4) 서울특별시는 2016년「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」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박용철, 박창호, 이명규, 이순학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**원안가결**(재석위원: 7명,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붙임 2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1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27년 12월 31일 ---------.